

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-8호

**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 
일부개정고시**

2025. 2. 18.

**식품의약품안전처**

##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

### 1. 개정이유

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 업무 현행 절차를 반영하여 규정 정비하고,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뢰성제고를 위한 민원처리기한 내 불시에 현장 심사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, 중요관리점 자동기록관리시스템(스마트 HACCP)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에 대해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시 가점부여 대상업종 및 스마트 HACCP 심벌표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스마트 HACCP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#### 가.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 절차

규정 현행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객관성, 공정성 확보(제22조의2, 제22조의3, 제23조의2 신설)

- 1)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 업무 절차, 지정 평가단 구성 등 현행 업무 절차를 반영하여 규정화하고
- 2)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, 교육훈련의 내실화를 하기 위함

나.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심사 신뢰성 제고를 위한 민원처리기한 내 불시에 현장 심사규정 마련(제11조제2항 신설)

- 1)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일정을 사전통지 후 해섭 인증 및 유효기간 연장(현장) 심사를 하고 있으나,
- 2) 연장심사 일정을 사전 통지함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 업체가 생산 중단 등 행정조사 목적 달성이 어려우므로 「행정조사기본법」 제17조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민원처리기한(60일) 이내 불시에 현장 심사할 수 있도록 연장심사 방법 개선
- 3) 연장심사를 민원처리기한 내에 불시에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연장심사 신뢰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다.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시스템(스마트 HACCP) 적용업소 가점 부여 업종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(제27조,[별표 4], [별표8] 개정)

- 1) 모든 중요관리점(CCP) 자동 기록관리시스템 등록업소 연장심사 시 제조업 위주의 가점 적용에서 냉장·냉동업 등으로 확대하여 인센티브 부여
- 2) 중요관리점 자동 기록관리시스템(스마트 HACCP) 심별 표시 대상 범위 확대를 통해 등록 활성화를 위한 규정 마련

라. 전문용어, 외국어 등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 하고 규정 내 다른 행정규칙 명 현행화(제5조제6항, 제6조제4항제2호·제6항, 제7조제2항, 제19조제2항·제4항제3호, 제27조, [별표 1] [별표 3] 내 규정명칭 등)

- 1) HACCP →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, 소정의 → 정해진, 제고 → 높이는데 등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정비
- 2) 「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」 → 「식품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 등 규정 내 다른 행정 규칙명 현행화를 통해 행정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

### 3. 기타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식품위생법, 축산물 위생관리법, 한국식품안전관리  
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(1)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: 비규제 확인(2024. 12. 20)

(2) 행정예고(2024. 12. 31~2025. 1. 24)

##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-8호

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부터 제48조의 5 및 「축산물위생관리법」 제9조부터 제9조의 6에 따른 「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(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3-26호, 2023. 4. 6.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
2025년 2월 18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###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

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조의5까지”를 “제9조의6까지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HACCP팀장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팀장”으로 한다.

제6조제4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도체(도축하여 머리 및 장기 등을 제거한 몸체)설명서(도축장에 한한다)

제6조제6항 중 “HACCP팀장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팀장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HACCP팀장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팀장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의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민원처리기한 내에 불시에 실시(농장은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
제16조제3항 중 “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을 “농림축산식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소정의”를 “정해진”으로 하고 “교육·훈련”을 “교육훈련”하며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문성 제고를”을 “전문성을 높이기”로 하고, “교육·훈련”을 “교육훈련”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전문성 제고”를 “전문성”으로 하고 “교육·훈련”을 “교육훈련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⑨ 같은 장소 또는 건물에서 식품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로 운영하는 업소 중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팀장이 동일한 경우, 제23조의3에 따른 통합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.

이 경우 제6항 각호에 따른 정기교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제22조제1항 중 “접수일”을 “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단을 구성하고, 접수일”로 한다.

제22조의2 및 제2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2조의2(교육훈련기관 평가단 운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제23조의 2에 따른 강사 전문성 평가의 객관성,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~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 관련 사무관 및 주무관 등 내부 전문가
2. 식품 등의 위생 관련 학과 교수,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 업체의 대표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팀장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등 외부 전문가
3. 그 밖에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

③ 평가단은 매 지정 평가 시에 구성·운영되며, 민원 처리가 완료되는

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1개의 평가단이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평가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2조의3(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등) ① 서류심사는 현장평가 이전에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, 적정성 등을 [별표 6의2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표(서류심사)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.

② 현장평가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, [별표 5]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[별표 6의2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표(현장평가)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③ [별표 5]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전문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[별표 6의3]에 따라 실시하며, 평가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.

④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가 모두 적합한 경우에 최종평가를 적합으로 처리한다.

⑤ 평가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종료 후 [별표 6의4] 안전관리인증기준

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3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강사전문성 평가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전문성을 갖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강사 전문성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강사 전문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중 강사 전문성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[별표 6의2]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강사의 이력서
2. 식품기술사자격증(또는 박사학위증)
3. 경력증명서 및 식품 또는 축산물 관련 자격증

③ 서류심사는 강사 전문성 평가 이전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, 적정성 등을 [별표 5]의 강사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.

④ 강사 전문성 평가는 제3항의 서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,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별 강의

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[별표 6의3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고, 평가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.

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

⑥ 평가단의 강사 전문성 평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3조의3(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등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중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정기교육훈련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 단,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공통 운영 교육 내용을 충분히 교육훈련 시킬 수 있어야 한다.

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하여”를 “대하여 [별표6의5] 교육 훈련기관 사후관리 평가표에 따라”로 한다.

제27조제4호 후단 중 “(CCP)에”를 “(CCP) 중 60%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제6호 중 “활성화 및 식품·축산물의 안전성 제고에”를 “활성화하고 식품·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데”로 한다.

[별표 1] I 바목제40호 단서 중 “HACCP 적용업소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적용업소”로 하고, 같은 표 III 다목 제13호 본문 중 “「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 규칙」”을 “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」”으로 한다.

[별표 3] 제1호 중 “HACCP가”를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이”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“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제3.축산물 시험방법 9. 미생물시험법에 의한다”를 “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8. 일반시험법 제4. 미생물 시험법에 의한다”로 한다.

[별표 4] 제2호 중 2-2 인증평가용(기타식품판매업), 2-3인증평가용(식품냉동·냉장업, 식품운반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),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)의 종합평가란에 가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 가점기준 >

인증평가 :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(모든 중요관리점(CCP)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)에 대해서는 총점에서의 6점을 가산한다.

[별표 4] 제3호 중 3-2.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([운반급식(개별 또는 별크 포장)]), 3-3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(축산물보관업), 3-4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(축산물운반업), 3-5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(식품운반업)의 다. 평가표 (HACCP

관리) 종합평가란에 가점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 가점기준 >

인증평가 :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(모든 중요관리점(CCP)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)에 대해서는 총점에서의 3점을 가산한다.

“[별표 4-1]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평가표”를 “[별표 4의2]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평가표”로 한다.

[별표 5] 제2호 중 “HACCP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”로 하고, “자로 전문성을 갖춘 자”를 “자 중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기관에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관련 교육훈련(식품·축산물 위생교육 포함)을 50시간 이상 강의 한 전문성을 갖춘 자”로 하며, 같은 호 가목 중 “HACCP 적용업소에서 HACCP팀장으로 HACCP”를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팀장으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,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 중 “HACCP”를 각각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”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<삭제>

사. 식품 또는 축산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정부가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 (HACCP) 적용업소에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

[별표 5] 제3호 중 “HACCP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4호 중 “교육·훈련”을 “교육훈련”으로 하며, 제4호가목 중 “HACCP 원칙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원칙”으로 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식품위생법상 HACCP”를 “식품위생법·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”로 하고, 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표 제5호 중 “HACCP”를 각각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”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“식품위생”을 “식품·축산물 위생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5호 중 “교육·훈련”을 “교육훈련”으로 하며, 같은 호 가목1) 및 2)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신규교육훈련과정

[별표 5] 제5호 가목 1) 중 “HACCP 경영자과정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경영자과정”으로, “HACCP 적용업소”를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”로 하고, 같은 목 2) 중 “HACCP 팀장과정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팀장과정”으로, “HACCP팀의”를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팀의”로, “HACCP팀이”를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팀이”로하며, 같은 호 나목 중 “HACCP 정기교육·훈련과정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정기교육훈련과정”으로, “HACCP 팀장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팀장”으로, “HACCP 시스템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시스템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제6호 중 “교육기관”을 “교육훈련기관”으로 한다.

“[별표 6-1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기관 등 지정 평가표”를  
 “[별표 6의2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표”로 하고,  
 같은 표 중 5번 평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평가내용		적부 판정 (O/X)	비고
	항목	기준		
서류심사				
5	교육훈련강사 현황 및 자격·경력 증빙 서류 각 1부 1. 강사의 이력서 2. 식품기술사자격증 (또는 박사학위증) 3. 경력증명서 및 식품 또는 축산물 관련 자격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HACCP 팀장으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</li> <li>○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</li> <li>○ 대학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에서 HACCP과 관련한 강의경력이 6학기 이상인 자</li> <li>○ 정부에서 2년 이상 HACCP 업무를 담당할 자격이 있는 자</li> <li>○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li>○ 식품 또는 축산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관련 업무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</li> </ul>		강사 면접 시 참고
		○ 정부 주관 또는 정부지정기관에서 HACCP 관련 교육훈련을 50시간 이상 강의한 자		필수요건

“[별표 6-2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기관 등 강사 전문성 평가표”를  
 “[별표 6의3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”  
 로 한다.

“[별표 6-3] HACCP 교육·훈련기관 지정/사후 평가결과 보고서”를  
 “[별표6의4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/사후 평가  
 결과 보고서”로 한다.

“[별표 6-4] HACCP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평가표”를 “[별표 6의5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평가표”로 하고, 같은 표 중 “HACCP”을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”으로 하며, 평가 내용 중 6. 강사와 시설·설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< 6. 강사와 시설·설비 기준 >  
강사의 자격 요건 해당 된 자의 전문성 유지 여부  
\*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([별표 6의3])활용 평가

[별표 8] 나목 본문 중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 품목 또는 업소로서 모든 중요관리점(CCP)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”를 “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 품목 또는 업소로서 모든 중요관리점(CCP) 중 60%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”로 한다.

**부 칙 <제2025-8호, 2025. 2. 18.>**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1조제2항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식품위생법」 제48조부터 제48조의5까지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부터 제68조의5까지 및 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」의 적용·운영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과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9조부터 <u>제9조의5까지</u>,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부터 제7조의11까지에 따른 「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」의 적용·운영 및 교육·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선행요건 관리) ① ~ ⑤ (생략) ⑥ 제3항에 따른 선행요건관리기준서를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할 때에는 일자, 담당자 및 HACCP 팀장 또는 영업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.</p> <p>제6조(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) ① ~ ③ (생략) ④ 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에 따른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9조의6까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선행요건 관리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 ----- -----<u>안전관리인증</u> <u>기준(HACCP) 팀장</u> ----- -----.</p> <p>제6조(안전관리인증기준 관리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, 담당자 및 HACCP팀장 또는 영업자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.</p>	<p>----- -----<u>안전관리인증</u> <u>기준(HACCP)팀장</u> ----- -----</p>
<p>제7조(축산물통합인증관리)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일자 및 HACCP팀장의 이름을 적고 서명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(축산물통합인증관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</u> <u>CCP) 팀장</u> ----- -----.</p>
<p>제11조(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 등) ① (생 략) &lt;신 설&gt;  ② ~ ⑥ (생 략)</p>	<p>제11조(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의 인증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의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민원처리기한 내에 불시에 실시(농장은 제외한다)할 수 있다.</u> ③ ~ ⑦ (현행 제2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)</p>
<p>제16조(조사·평가 방법) ①·② (생 략) ③ <u>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「축</u></p>	<p>제16조(조사·평가 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농림축산식품부장관</u>----- -----</p>



현 행	개 정 안
<p>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관의 <u>전문성 제고</u>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과정을 운영하여 <u>교육·훈련</u>을 실시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지도관 실무교육과정 :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지도관들의 <u>전문성 제고</u> 및 자질향상을 위해 최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관련 정보 및 사후관리기법 등을 <u>교육·훈련</u>하는 과정</p> <p>⑤ ~ ⑦ (생략)</p> <p>제20조(교육훈련 등)</p> <p>①·⑧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④ ----- ----- ----- <u>전문성을 높이기</u> ----- -----<u>교육훈련</u>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전문성</u> ----- ----- -----<u>교육훈련</u>----- -----</p> <p>⑤ ~ 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교육훈련 등)</p> <p>①·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⑨같은 장소 또는 건물에서 식품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로 운영하는 업소 중 식품과 축산물의 안전 관리인증기준(HACCP) 팀장이 동일한 경우, 제23조의3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다. 이 경우 제6항 각 호에 따른 정기교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제22조(교육훈련기관의 지정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1조 제1항에 따른 교육·훈련기관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심사와 실태조사를 통해 교육·훈련기관으로서 교육수행능력 적정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·훈련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u>육훈련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.</u></p> <p>제22조(교육훈련기관의 지정) ① ----- ----- ----- <u>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단을 구성하고, 접수일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22조의2(교육훈련기관평가단 운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제23조의 2에 따른 강사 전문성 평가의 객관성, 공정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평가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3~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u></p> <p><u>1.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농림</u></p>

현행	개정안
	<p><u>축산식품부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관련 사무관 및 주무관 등 내부전문가</u></p> <p>2. <u>식품 등의 위생 관련 학과 교수,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 업체의 대표 또는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팀장으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등 외부 전문가</u></p> <p>3. <u>그 밖에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전문가</u></p> <p>③ <u>평가단은 매 지정 평가 시에 구성·운영되며, 민원 처리가 완료되는 시점에 자동으로 해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1개의 평가단이 여러 건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 효과적이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</p> <p>④ <u>평가단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22조의3(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 등) ① 서류심사는 현장평가기전에 제21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, 적정성 등을 [별표 6의2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표(서류심사)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현장평가는 제1항의 서류심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, [별표 5]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라 교육시설 및 장비 등을 [별표 6의2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표(현장평가)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③ [별표 5]의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전문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[별표 6의3]에 따라 실시하며, 평가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.</p> <p>④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가</p>

현행	개정안
<p>&lt;신설&gt;</p>	<p>모두 적합한 경우에 최종평가를 적합으로 처리한다.</p> <p>⑤ 평가단은 서류심사 및 현장 평가 종료 후 [별표 6의4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 평가결과 보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제23조의2(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전문성 평가 등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의 강사 전문성을 갖춘자가 퇴직 등의 사유로 강사 전문성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강사 전문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중 강사 전문성 평가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[별표 6의2]에 따른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</p>

현행	개정안
	<p>1. 강사의 이력서</p> <p>2. 식품기술사자격증(또는 박사 학위증)</p> <p>3. 경력증명서 및 식품 또는 축산물 관련 자격증</p> <p>③ 서류심사는 강사 전문성 평가 이전에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구비여부, 적정성 등을 [별표 5]의 강사의 자격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</p> <p>④ 강사 전문성 평가는 제3항의 서류 심사결과가 적합한 경우에 실시하며, 강사에 대한 전문성 평가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별 강의발표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[별표 6의3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고, 평가자의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일 경우 적합으로 판정한다.</p> <p>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에 따른 평가단을 구성·운영하여야 한다.</p>



현행	개정안
<p>1. ~ 5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제27조(우대조치)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로 인증된 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의 경우 그 사실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가 가능하며, 이 경우 모든 중요관리점(CCP)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하여 별표 8 나목에 따른 심벌 표시 또는 광고 허용</p> <p>5. (생략)</p> <p>6. 기타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<u>활성화 및 식품·축산물 안전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우대조치</u></p> <p>[별표 1] 선행요건, I.바. 40</p> <p>영업자는 원·부자재 공급업소 등 협력업소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</p>	<p>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7조(우대조치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(CCP)</u></p> <p><u>중 60% 이상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</p> <p>-----<u>활성화하고 식품·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는데</u></p> <p>-----</p> <p>[별표 1] 선행요건, I.바. 40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.</p> <p>다만, 공급업소가 식품위생법 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HACCP 적용업소일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</p> <p>[별표 1] 선행요건, III.기타식품판매업소 다. 13.</p> <p>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</p> <p>[별표 3]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</p> <p>1.목적</p> <p>이 검사요령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 그리고 이 고시 제8조 및 제14조의2에 따라 도축장에서 HACCP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6.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</p> <p><u>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</u></p> <p><u>제3. 축산물 시험방법</u></p> <p><u>9. 미생물시험법에 의한다.</u></p> <p>[별표4]안전관리인증기준 (HACCP)실시상황평가표</p> <p>2. HACCP 관리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안전관리</u>-----</p> <p><u>인증기준(HACCP)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[별표 1] 선행요건, III.기타식품판매업소 다. 13.</p> <p><u>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</u></p> <p>[별표 3]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</p> <p>1.목적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안전관리</u>-----</p> <p><u>인증기준(HACCP)이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6. 시료채취 및 검사방법</p> <p>식품의 기준 및 규격</p> <p><u>제8. 일반시험법 4. 미생물 시험법</u></p> <p><u>9. 미생물시험법</u>-----.</p> <p>[별표4]안전관리인증기준 (HACCP)실시상황평가표</p> <p>2. HACCP 관리</p>

현행	개정안
<p>2-2. 인증평가용(기타식품판매업) 종합평가 <u>&lt; 신설 &gt;</u></p>	<p>2-2. 인증평가용(기타식품판매업) 종합평가 <u>&lt;가점기준&gt;</u> <u>인증평가 :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(모든 중요 관리점(CCP)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)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6점을 가산한다.</u></p>
<p>2-3. 인증평가용(식품냉동·냉장업, 식품운반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),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) 종합평가 <u>&lt; 신설 &gt;</u></p>	<p>2-3. 인증평가용(식품냉동·냉장업, 식품운반업, 식육포장처리업,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, 식육부산물 전문판매업,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), 식육즉석판매가공업, 축산물보관업, 축산물운반업) 종합평가 <u>&lt;가점기준&gt;</u> <u>인증평가 :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(모든 중요 관리점(CCP)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)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6점을 가산한다.</u></p>
<p>3. 소규모 업소 등 3-2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[운반급식(개별 또는 벌크 포장)]</p>	<p>3. 소규모 업소 등 3-2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[운반급식(개별 또는 벌크 포장)]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다. 평가표(HACCP 관리) 종합평가 <u>&lt; 신 설 &gt;</u></p> <p>3-3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(축산물보관업)</p>	<p>다. 평가표(HACCP 관리) 종합평가 &lt;가점기준&gt; <u>인증평가 :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(모든 중요 요관리점(CCP)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)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한다.</u></p>
<p>3-3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(축산물보관업)</p> <p>다. 평가표(HACCP 관리) 종합평가 <u>&lt; 신 설 &gt;</u></p>	<p>3-3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(축산물보관업)</p> <p>다. 평가표(HACCP 관리) 종합평가 &lt;가점기준&gt; <u>인증평가 :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(모든 중요 요관리점(CCP)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)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한다.</u></p>
<p>3-4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(축산물운반업)</p> <p>다. 평가표(HACCP 관리) 종합평가 <u>&lt; 신 설 &gt;</u></p>	<p>3-4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(축산물운반업)</p> <p>다. 평가표(HACCP 관리) 종합평가 &lt;가점기준&gt; <u>인증평가 :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(모든 중요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3-5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(식품운반업) 다. 평가표(HACCP 관리) 종합평가 <u>&lt; 신 설 &gt;</u></p> <p>[별표 4-1] <u>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평가표</u></p> <p>[별표5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2. 강사의 자격요건 교육훈련기관의 강사는 이 고시 에서 정하는 선행요건 및 HACCP, 식품산업체의 인적·물적·관리 적 현황 및 실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하며,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<u>자로 전문성을 갖춘 자</u></p>	<p><u>요관리점(CCP)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)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한다.</u></p> <p>3-5. 인증평가 및 사후관리용 (식품운반업) 다. 평가표(HACCP 관리) 종합평가 <u>&lt;가점기준&gt;</u> <u>인증평가 :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적용업소로 등록된 업소(모든 중요 요관리점(CCP)에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함)에 대해서는 총점에서 3점을 가산한다.</u></p> <p>[별표 4의2] <u>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등록 평가표</u></p> <p>[별표5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 2. 강사의 자격요건 ----- -----<u>안전관리인</u> <u>증기준(HACCP),</u>----- ----- ----- -----<u>자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가. 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HACCP팀장으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</p> <p>나. 정부 주관 또는 정부지정 기관에서 HACCP 관련 교육훈련을 50시간 이상 강의한 자</p> <p>다.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</p> <p>라. 대학이상의 식품관련 학과에서 HACCP과 관련한 강의경력이 6학기 이상인 자</p> <p>마. 정부에서 2년이상 HACCP 업무를 담당할 경력 있는 자</p> <p>바.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처장이 인정하는 자</p> <p>&lt;신설&gt;</p>	<p><u>중 정부 주관 또는 정부 지정기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관련 교육훈련(식품·축산물 위생 교육 포함)을 50시간 이상 강의한 전문성을 갖춘 자</u></p> <p>가. ----- 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</u>-----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</u>-----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</u> -----</p> <p>나. &lt;삭제&gt;</p> <p>다.-----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</u>-----</p> <p>라.-----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</u>-----</p> <p>마.-----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</u> -----</p> <p>바. 현행과 같음</p> <p>사. <u>식품 또는 축산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정부가 지정한 안전관</u></p>

현 행	개 정 안
<p>3. 강사의 확보 등</p> <p>교육훈련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전문 강사를 2명 이상, HACCP 교육훈련 관리자 1명 이상을 상시 근무하는 자로 확보하여야 하고, 강사자격요건에 적합한 강사자 전체교육훈련시간의 60% 이상을 담당하여야 한다.</p> <p>4. 교육훈련의 범위</p> <p>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교육·훈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.</p> <p>가. HACCP 원칙과 절차의 기본적인 이해에 관한 사항</p> <p>나. <u>식품위생법상 HACCP</u> 관련 규정</p> <p>다. HACCP의 실제적용 기술 및 방법</p> <p>라. HACCP 실시상황평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</p>	<p><u>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에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</u></p> <p>3. 강사의 확보 등</p> <p>-----, 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</u> -----</p> <p>4. 교육훈련의 범위</p> <p>----- <u>교육훈련</u> -----</p> <p>가. 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</u></p> <p>-----</p> <p>나. <u>식품위생법·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</u></p> <p>-----</p> <p>다. 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</u></p> <p>-----</p> <p>라. 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</u></p> <p>-----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마. 기타 HACCP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<u>식품위생 및 일반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</u></p> <p>5. 교육훈련과정의 개설 및 운영 교육훈련기관은 HACCP 체계의 구축·운영·관리의 <u>교육·훈련</u> 목적에 적합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<u>교육·훈련과정</u>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설·운영하여야 하며, 필요시 기타 다른 <u>교육·훈련과정</u>을 개설·운영하거나 병합하여 개설할 수 있다.</p> <p>가. HACCP 신규 교육과정</p> <p>1) HACCP 경영자과정 : HACCP 적용업소의 총괄운영·관리를 위해 영업자가 이해하여야 할 사항을 <u>교육·훈련</u>하는 과정</p> <p>2) HACCP 팀장과정 : HACCP 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HACCP팀이 숙지해야 할 사항을 <u>교육·훈련</u> 하는 과정</p>	<p>마. 기타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-----<u>식품·축산물위생</u> -----</p> <p>5. 교육훈련과정의 개설 및 운영 -----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-----<u>교육훈련</u>----- ----- <u>교육훈련</u>-----, ----- ----- <u>교육훈련</u>----- ----- --.</p> <p>가.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<u>신규교육훈련과정</u></p> <p>1)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----- :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----- <u>교육훈련</u> 하는 과정</p> <p>2)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----- : 안전관리인증기준 (HACCP)팀의 ----- <u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팀</u>----- <u>교육훈련</u> -----</p>

현행	개정안
----	-----

나. HACCP 정기교육·훈련과정 : HACCP 팀장 또는 팀원이 HACCP 시스템의 사후검증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·훈련하는 과정

6. 교육기관의 지정기준

[별표 6-1]

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기관 등 지정평가표

구분	평가내용		적부 판정 (O/ X)	비고
	항목	기준		
서류심사				
5	교육훈련강사 현황 및 자격·경력 증빙 서류 각 1부 1. 강사의 이력서 2. 식품기술사자격증 또는 박사학위증 3. 경력증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HACCP 팀장으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</li> <li>○ 정부 주관 또는 정부지정 기관에서 HACCP 관련 교육훈련을 50시간 이상 강의한 자</li> <li>○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</li> <li>○ 대학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에서 HACCP와 관련한 강의경력이 6학기 이상인 자</li> <li>○ 정부에서 2년 이상 HACCP 업무를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○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/ul>	강사 면접 시 참고	

[별표 6-2]

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기관 등 강사 전문성 평가표

나.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정기교육훈련과정 :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팀장 --- ---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-----  
-----교육훈련-----

6. 교육훈련기관-----

[별표 6의2]

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표

구분	평가내용		적부 판정 (O/ X)	비고
	항목	기준		
서류심사				
5	교육훈련강사 현황 및 자격·경력 증빙 서류 각 1부 1. 강사의 이력서 2. 식품기술사자격증 (또는 박사학위증) 3. 경력증명서 및 식품 또는 축산물 관련 자격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HACCP 팀장으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</li> <li>○ 식품기술사 또는 식품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HACCP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 자</li> <li>○ 대학 이상의 식품관련 학과에서 HACCP와 관련한 강의경력이 6학기 이상인 자</li> <li>○ 정부에서 2년 이상 HACCP 업무를 담당할 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○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자</li> <li>○ 식품 또는 축산물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정부가 지정한 HACCP 적용업소에서 관련 업무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을 가진자</li> <li>○ 정부 주관 또는 정부지정 기관에서 HACCP 관련 교육훈련을 50시간 이상 강의한 자</li> </ul>	강사 면접 시 참고	필수 요건

[별표 6의3]

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

현 행					개 정 안				
[별표 6-3] HACCP 교육·훈련기관 지정/사후 평가결과 보고서					[별표 6의4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 련기관 지정/사후 평가결과 보고서				
[별표 6-4] HACCP 교육훈련기관 사후관리 평가표					[별표 6의5]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 훈련기관 사후관리 평가표				
구분	항목	평가내용 기준	적부 판정 (O/A)	비고	구분	항목	평가내용 기준	적부 판정 (O/A)	비고
<b>HACCP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</b>					<b>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준수사항</b>				
1	교육 교재의 개발, 편찬 및 보급	○ 교육훈련에 적합한 교재의 개발, 편찬 및 보급 실시 여부			1	교육 훈련 교재의 개발, 편찬 및 보급	○ 교육훈련에 적합한 교재의 개발, 편찬 및 보급 실시 여부		
2	교육 실시 계획 서의 제출	○ 교육훈련과정명 및 내용 ○ 교육훈련과정별 실시 시간 시간 및 장소 ○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생의 정원 ○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교재 ○ 교육훈련 결과의 평가방법 및 횟수		추가 교육 훈련 을 실시 하고 자 하는 우 는 육 력 개 시 7 일 전 에 제출	2	교육 실시 계획 서의 제출	○ 교육훈련과정명 및 내용 ○ 교육훈련과정별 실시 시간 시간 및 장소 ○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생의 정원 ○ 교육훈련과정별 교육훈련 교재 ○ 교육훈련 결과의 평가방법 및 횟수		추가 교육 훈련 을 실시 하고 자 하는 우 는 육 력 개 시 7 일 전 에 제출
3	교육 정보 의 공개	○ 개설 교육훈련과정명, 과정별 기간, 시간 및 장소 ○ 교육훈련 시설 ○ 연간 교육훈련계획 ○ 교육훈련 강사현황 ○ 교육훈련 실적		인터 넷, 인쇄 물, 안내 물 등 이 용	3	교육 정보 의 공개	○ 개설 교육훈련과정명, 과정별 기간, 시간 및 장소 ○ 교육훈련 시설 ○ 연간 교육훈련계획 ○ 교육훈련 강사현황 ○ 교육훈련 실적		인터 넷, 인쇄 물, 안내 물 등 이 용
4	기타 준수 사항	○ 식약처장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시 부여한 사항 준수 여부 ○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과정 등을 지연 또는 폐쇄·거부하였는지 여부 ○ 교육훈련기관지정서 사본을 교육훈련 장소에 게시하였는지 여부 ○ 식약처장의 교육훈련관련 자료제출 요구시 지체없이 이행하였는지 여부 ○ 교육훈련업무 관련사항 중 변동 사항이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 또는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○ 교육훈련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였는지 여부 ○ 교육훈련결과를 매년도 종료후 익월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			4	기타 준수 사항	○ 식약처장이 교육훈련기관 지정시 부여한 사항 준수 여부 ○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훈련과정 등을 지연 또는 폐쇄·거부하였는지 여부 ○ 교육훈련기관지정서 사본을 교육훈련 장소에 게시하였는지 여부 ○ 식약처장의 교육훈련관련 자료제출 요구시 지체없이 이행하였는지 여부 ○ 교육훈련업무 관련사항 중 변동 사항이나 중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식약처장에게 즉시 보고 또는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하였는지 여부 ○ 교육훈련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였는지 여부 ○ 교육훈련결과를 매년도 종료후 익월 30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였는지 여부		
<b>교육훈련기관 평가</b>					<b>교육훈련기관 평가</b>				
5	교육 방법 및 내용	○ 교육훈련과정운영 준수 여부			5	교육 방법 및 내용	○ 교육훈련과정운영 준수 여부		
6	강사 와 시설 설비	○ 전문강사가 전체교육훈련시간의 60%이상을 담당하였는지 여부 ○ 과정별 교육훈련 인원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○ 교육훈련 시설·설비 유지현황 및 개선사항 확인		가능 한 30 명 이내	6	강사 와 시설· 설비	○ 강사의 자격 요건 해당 된 자의 전문성 유지 여부 * 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교육훈련기관 강사 전문성 평가표(별표 6의3)활용 평가 ○ 전문강사가 전체교육훈련시간의 60%이상을 담당하였는지 여부 ○ 과정별 교육훈련 인원이 적정하였는지 여부 ○ 교육훈련 시설·설비 유지현황 및 개선사항 확인		가능 한 30 명 이내

현 행				개 정 안			
7	교육만족도	○ 과정별 교육훈련 후,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	인터넷공개 (적부정보미합)	7	교육만족도	○ 과정별 교육훈련 후,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	인터넷공개 (적부정보미합)
8	기타 사항	○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	지정취소	8	기타 사항	○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	지정취소
		○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일로부터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(□ 1년 미만 □ 1년 이상)	시정 또는 6개월간 교육훈련과정지			○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일로부터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지 않은 경우 (□ 1년 미만 □ 1년 이상)	시정 또는 6개월간 교육훈련과정지
		○ 교육훈련실적 및 내용이 극히 부실한 경우	6개월간 교육훈련과정지			○ 교육훈련실적 및 내용이 극히 부실한 경우	6개월간 교육훈련과정지
		○ 교육훈련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는지 여부	지정취소			○ 교육훈련수료증을 허위로 발급하였는지 여부	지정취소
		○ 교육훈련대상 미보관 또는 허위 기재 여부				○ 교육훈련대상 미보관 또는 허위 기재 여부	
○ 교육훈련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		○ 교육훈련업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					
<p>[별표 8]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품목 심벌(제27조 관련)</p> <p>나.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(스마트 해썹, Smart HACCP) 심벌</p> <p>※ <u>모든 중요관리점(CCP)에</u>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한다.</p>				<p>[별표 8]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품목 심벌(제27조 관련)</p> <p>나.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(스마트 해썹, Smart HACCP) 심벌</p> <p>※ <u>모든 중요관리점(CCP) 중</u> 60% 이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업소에 한한다.</p>			